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 인공지능융합전공 학사운영 내규

제정 2022년 9월

개정 2023년 4월

개정 2023년 7월

개정 2024년 1월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인공지능융합전공 학사운영 지침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운영위원회) 본 학과 대학원의 학사운영 및 학생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학과장 또는 학과장이 위임하는 자가 담당한다. 소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3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①위원장
- ②학과장(위원장이 학과장과 다른 경우)
- ③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 이내

제 3 조 (소위원회 소집)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위원장 혹은 학과장의 요구에 의해 개최된다.

제 4 조 (소위원회 기능) 소위원회에서는 학과 내에서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 ① 논문지도교수의 변경
- ② 학과 교수와 학생의 고충 처리
- ③ 장학금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학과의 석·박사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본 내규의 개정

제 5 조 (인공지능융합전공 분야) ① 인공지능융합전공은 AI 의료·바이오 융합과 AI 융합 기반 기술의 인공지능융합분야로 나뉘며, 학생들은 이 가운데 하나의 전공분야를 1차 학기까지 선택한다.

② 전공분야 변경은 학과장 및 지도교수 동의하에 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보충과목 및 변경분야과목 이수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제 6 조 (지도교수) ① 인공지능융합전공의 학생은 최대 2명의 지도교수와 1명의 산업체지도교수를 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논문지도교수를 의미하며 인공지능융합전공 참여교수를 지도교수로 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타 전공소속 교수 1인을 공동지도교수로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 및 논문지도교수는 각각 논문지도교수 변경

및 지도학생 포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한다.

1. 논문지도교수의 퇴임 및 유고
2. 1호 이외의 이유로 학생이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3. 논문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포기하는 경우

제 7 조 (장학금) ① 인공지능융합전공의 학생은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사업 기간 동안 입학 시점에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한 장학금 액수를 수업연한 동안 지원받는다 (기본 수업연한인 석사학위과정 2년, 박사학위과정 2년, 석·박사통합과정 4년을 따르되 통합의 경우 1년 단축 가능함). 단, 장학금 지속 수혜를 위해서는 한 학기 단위로 다음 조건 중 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4. 12, 2023. 7. 24.>

1. 학위취득 교과목 학점 평점 평균 3.3 이상 유지하고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을 성실히 수행
2. 학위논문 제출자격 혹은 석사논문대체제도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실적 및 산학협력 성과가 있을 경우
3.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도교수의 청원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 가능

②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금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1. 1차 학기에 휴학할 경우. 단, 2차 학기부터 휴학할 경우 복학 시 장학금을 다시 수혜.
2. 재학 중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사업과 관련이 없는 근로계약 사실이 보고된 경우
3. 전과, 자퇴, 징계 및 제적되는 경우는 수혜자격 상실과 동시에 기 수혜 장학금 전액 환수. 단, 해당학기 성적취득 후 자퇴하는 경우 환수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음
4. 입학지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5. 연구 수행 시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도교수의 청원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장학금 지원여부 심의 가능

③ 장학금 수혜를 위해서 장학금 수혜 의무사항 준수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제 8 조 (학위취득학점) ①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24학점 중 인공지능융합 전공 개설 AI 기술 과목 6학점 이상, AI 융합기술 과목 6학점 이상과 AI 융합 실무 과목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60학점 중 인공지능융합 전공 개설 AI 기술 과목 15학점 이상, AI 융합기술 과목 12학점 이상과 AI 융합 실무 과목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5.>

③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36학점 중 인공지능융합 전공 개설 AI 기술 과목 12학점 이상, AI 융합기술 과목 9학점 이상과 AI 융합 실무 과목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AI 융합 실무 과목 9학점을 본교 인공지능융합전공 석사과정 중 취득한 경우 AI 융합 실무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단서 신설 2024. 1. 15.>

④ 단, 수강신청 이전에 지도교수와 학과(전공)의 허가를 받은 본교 및 타대학 대학원 과목에 한하여 AI 기술 및 AI 융합기술 영역의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가능하다.

제 9 조 (교과과정) 인공지능융합전공 교과과정체계를 따라 이수한다.

제 10 조 (보충과목) ① 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3학점 이상, 12학점 이하의 보충과목 이수를 부과하고 제 1학기 수강신청 전에 해당 학생에게 통보한다. 보충학점 부과자의 보충과목 선정에 대한 지도는 지도교수 혹은 학과장이 한다.

1. 석사학위과정 입학생으로 학부 전공분야가 컴퓨터공학 분야가 아닌 학생 (3 ~ 12학점)
2. 박사 및 통합과정 입학생으로 학부 및 석사 전공분야가 컴퓨터공학 분야가 아닌 학생 (3 ~ 12학점)
3. 기타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② 보충과목을 수강하는 학기에는 학칙 제22조에 의한 학기당 취득학점 외에 3학점 까지 더 취득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 (종합시험 및 통합과정자격시험) ① 학생은 선택한 인공지능융합분야(의료/바이오 융합, AI 융합 기반 기술)의 교과목 중 총 3과목을 선택하되 AI 기술 교과목 영역에서 1과목을 필수로 선택해야 하고 AI 융합기술 및 AI 융합 실무 교과목 영역에서 복수선택 허용하여 2과목을 선택한다.

② 제①항의 시험에 있어서 시험과목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각 과목에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 시행일은 매 학기 기말고사 기간 다음 주의 목요일이나 금요일로 정한다.

④ 시행일 이전에 출제교수와 응시학생의 접촉을 금하며, 출제교수가 자신을 출제위원으로 정한 학생을 알 수 없도록 한다.

제 12 조 (석사학위논문심사) 석사논문제출자는 심사논문을 심사일 1주일 이전에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야한다. 그렇지 못한 학생은 논문심사에서 제외한다. 심사위원 3인은 인공지능 융합분야에 따라 학과에서 배정하며, 심사일은 해당학기 마지막 주를 원칙으로 하며 학과에서 지정한다.

제 13 조 (박사학위논문 주제발표) 박사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논문심사 직전 학기까지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의 교수로 구성된 논문주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논문주제발표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박사학위논문심사) ① 박사과정 학생은 지도교수와의 협의 아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은 될 수 있으나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② 박사학위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 가운데 1인 이상을 박사학위를 가진 외국 인사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외국 인사란 한국 이외의 나라에 거주하며, 논문심사청구 대상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지닌 학계 혹은 산업계의 인사를 말한다.

제 15 조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제4장 제31조에 따른다.

②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1번 혹은 2번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각 논문에 대해 주저자로서 게재하거나 게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제 SCI 학술지 논문 1편 (Impact Factor 4.0 이상)

2. 다음 조건 중 중복 허용하여 두 개 만족

가. 한국정보과학회 우수학술대회 리스트에 포함된 학술대회 논문 1편.

단, 최근 3년 중 한해라도 우수학술대회 리스트 포함된 학술대회면 인정함

나. 국제 SCI 학술지 논문 1편

다. IEEE/ACM/USENIX 학회본부 주관 국제학술대회 3년 연속 채택을 50% 이하인 논문

③ 학위 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16 조 (박사학위논문등록) 전일제로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은 수료 후에는 논문 등록을 하여 박사과정 학생의 신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제 17 조 (석사학위논문대체제도) ① 대학원 학칙 제29조 3항,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0조의3, 제21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융합전공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을 시행한다.

1. (기본 원칙)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등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 게재

2. (별도 기준) 다음조건 중 하나 만족

가. 국제 컨퍼런스 논문발표 (SCOPUS 등재 혹은 정보과학회 우수학술대회 목록에 포함된 국제 컨퍼런스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발표)

나. 특허등록 혹은 기술이전이 완료된 학생 단독 실적

부 칙

이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 12. 개정)

이 내규는 202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7. 24. 개정)

이 내규는 202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15. 개정)

이 내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